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
전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육미선 의원 등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0년 3월 4일
- 회부일자 : 2020년 3월 5일

3. 제안이유

-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의 시행('19.12.25.)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,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여성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을 변경함.

- 충청북도 아동·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조례
→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

나. 여성폭력, 여성폭력피해자,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시함. (안 제2조)

-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3조에 따라 ‘여성폭력’ 범위 안에 여성에 대한 폭력(성폭력, 가정폭력, 성매매, 성희롱 등)을 포괄적으로 포함

다. 도지사는 매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정책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함. (안 제5조)

- 라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을 명시하고, 사업을 위탁받은 시설, 관련기관, 단체 등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를 규정함.
(안 제7조)
- 마.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11조에 따른 ‘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’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(안 제8조~안 제14조)
- 바.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, 의료기관, 교육기관,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. (안 제15조)
- 사. 기존 조례의 ‘충청북도 아동·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’는 개정되는 조례의 ‘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’로 봄.
(부칙 제2조)

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강근)

가. 제출배경

- 본 조례안은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한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이 제정되어 2019년 12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임.
※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에 따른 조례개정 6개 시·도(서울 부산 대구 경기 전남 제주)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제명을 “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조례”로 변경하는 것은 현행 조례에서 아동·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을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정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으로 지원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여, 이를 종합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.

- 현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업무는 보건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,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업무는 여성가족정책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소관부서에 따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도 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.

※ 개정조례안에서 제외된 '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'정책은 「아동복지법」, 「충청북도 아동복지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, 「충청북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」등에 따라 추진하고, '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'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기존 조례포함 또는 별도 조례 제정은 별도 검토 필요

○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으로,

- 여성폭력,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의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2조를 준용하였고,
-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에 대한 정의도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규정함.

• 여성폭력

-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·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, 성폭력, 성매매, 성희롱,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

• 여성폭력 피해자

-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(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),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

• 피해자 보호·지원시설

- 국가와 지자체 등이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해 설치한 시설로 성폭력피해상담소,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,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, 긴급전화센터,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, 가정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, 자활지원센터, 성매매피해상담소 등

○ 안 제5조는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정책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

- 이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- 안 제6조는 충청북도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.
 -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12조제2항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 마다 여성폭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제3항에 ‘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여성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’고 규정되어 있는 바 문제가 없음.

-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추진하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,
 - 이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에 규정된 시책 사업을 기반으로,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함.

• 여성폭력방지기본법

제15조(피해자 보호·지원) ① 국가와 **지방자치단체**는 피해자에 대한 상담, 의료 제공, 구조금 지급, 법률구조, 취업 관련 지원, 주거 지원, 취학 지원 및 그 밖에 피해자의 보호, 회복, 자립·자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관계 법률에 따라 시설을 설치·운영할 경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 보호·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19조(여성폭력 예방교육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제20조(홍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한다.

- 안 제8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11조에서 위임한 지방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
<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신설>

구 분	아동·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협의회 (현행)	여성폭력방지위원회 (전부개정조례안)
기 능	여성·아동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의 협의·자문 1. 아동·여성 보호·치료 등 지역연대 운영계획 수립 및 시책 마련 2. 아동·여성안전 관련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3. 아동·여성안전을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 전개 4. 지역연대 참여기관이나 지역 내 기관·단체에서 제시한 아동·여성안전관련 지역현안 해결 사업 5. 그 밖에 아동·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항	여성폭력방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 1.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2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.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위 원 수	20명 이내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	20명 이내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
위원임기	2년, 1회 연임가능	2년, 1회 연임가능
위원구성	1. 충청북도의회의 의원 2.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피해자 등 여성권익 관련시설·단체에서의 추천인 3. 아동보호관련 시설·기관에서의 추천인 4. 청소년상담지원시설·기관에서의 추천인 5. 긴급 또는 응급구조 등 의료기관에서의 추천인 6. 아동·여성·청소년 관련 학과 대학 교수 7. 각급 교육기관 및 교육청에서의 추천인 8. 경찰, 검찰, 법원 등 사법 관련기관에서의 추천인 9. 그 밖에 아동·여성폭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	⇒ 1.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. 다음 각 목의 기관·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. 피해자 보호·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·단체 나.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다. 각급 교육기관,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. 경찰 및 검찰, 법원, 대한법률구조공단,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기관 3.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회 의	연 2회 이상 개최	연 2회 이상 개최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의 시행('19. 12.25.)에 따라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보호지원에 관한 충청북도의 책임과 종합적·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법적, 내용적으로 타당하며, 조례안 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없음.